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2킬로미터”를 “2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지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제7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부 칙(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5년 7월 24일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2. 2021년 00월 00일¹⁾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별표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지 단서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단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보하는 교지부터 적용한다.

1) 개정령안 시행일

[별표 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통·폐합 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
1. 대학 간 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2.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원 입 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가.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 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 을 정할 수 있다.
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가.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

	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 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 을 정할 수 있다.
6. 전문대학 간 통·폐합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 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⑤ (생략)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⑤ (현행과 같음)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1. <삭제>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2.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교지) ① 대학은 별표 4의 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따른 별표 4의 기준면적을 충족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교지) ① ----- ----- ----- ----- ----- ----- ----- ----- ----- ----- -----
<단서 신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현행	개정안
1. (생략) 2. 교지 경계선(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u>2킬로미터</u> 이하인 경우 <u><단서 신설></u> <u><신설></u>	<u>된 경우만 해당한다.</u> 1. (현행과 같음) 2. ----- ----- ----- ----- -----<u>20</u> <u>킬로미터</u>----- <u>다만, 교지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 3. <u>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u>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가</u>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u>감정평가법인등이</u>----- ----- -----

현행	개정안												
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 ⑤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와 이 영 시행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 ⑤ (현행과 같음) 부칙(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제2조(수익용기본재산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5년 7월 24일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2. 2021년 00월 00일 전에 대학 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												
별표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table border="1"> <tr> <th>통·폐합 유형</th><th>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th></tr> <tr> <td>1. 대학간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td><td>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r> <td>2. 대학과 대학원</td><td>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td></tr> </table>	통·폐합 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	1. 대학간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2. 대학과 대학원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	별표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table border="1"> <tr> <th>통·폐합 유형</th><th>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th></tr> <tr> <td>1. 대학간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td><td>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r> <td>2. 대학과 대학원</td><td>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td></tr> </table>	통·폐합 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	1. 대학간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2. 대학과 대학원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통·폐합 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												
1. 대학간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2. 대학과 대학원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미충												
통·폐합 유형	입학정원 감축기준 (통·폐합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해의 3년 전 학년도 기준)												
1. 대학간통·폐합 (대학의 본교와 분교 간 통·폐합을 포함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2. 대학과 대학원	대학원대학의 최근 3년간 평균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대학 간 통·폐합</td><td>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r> <td>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td><td>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td></tr> <tr> <td>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td><td>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r> <td>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td><td>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td></tr> <tr> <td>6. 전문대학 간 통·폐합</td><td>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able>	대학 간 통·폐합	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6. 전문대학 간 통·폐합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table border="1"> <tr> <td>대학 간 통·폐합</td><td>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r> <td>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td><td>가.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td></tr> <tr> <td>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td><td>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r> <td>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td><td>가.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td></tr> <tr> <td>6. 전문대학 간 통·폐합</td><td>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td></tr> </table>	대학 간 통·폐합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가.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	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가.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	6. 전문대학 간 통·폐합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	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6. 전문대학 간 통·폐합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3.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가. 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																				
4. 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	산업대학 입학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5.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가. 산업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 다만,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감축한다. 나. 전문대학으로 통·폐합하는 경우 가에 따라 감축된 입학정원을 수업연한이 4년인 과에 모두 배정하는 것으로 보아 산출된 편제완성연도 기준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과 등의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다.																				
6. 전문대학 간 통·폐합	최근 3년간의 평균 미충원 입학정원 이상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감축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203-6362